

2025학년도 재외국민

신입생 모집요강



2024. 5.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차 례

1. 전형일정	5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5
3. 유형별 지원 자격	6
4. 제출서류	9
5. 전형요소	12
6. 면접고사	12
7. 선원건강검진	12
8. 선발방법	13
9. 등록금 납부	13
10.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	14

입학원서 접수

1. 입학원서 접수 기간

- 2024. 7. 8.(월) 09:00 ~ 7. 12.(금) 18:00

2. 입학원서 접수 사이트

- 우리대학 홈페이지 → <http://www.jinhakapply.com> (주)진학어플라이

3. 전형서류 제출

가. 제출 기간: 2024. 7. 8.(월) 09:00 ~ 7. 26.(금) 18:00

나. 제출 방법: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제출

※ 우편으로 발송한 전형서류가 마감 시간이 지나 도착할 경우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람

다. 제출할 곳

(우) 58628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입학학생처 입학팀

라. 전형서류 도착 여부는 입학원서 제출 사이트에서 확인

4. 전형료(인터넷원서접수 수수료 포함)

(단위 : 원)

전형료 내역			합계
인터넷원서접수 수수료	일반 관리비	면접 고사료	
5,000	5,000	50,000	60,000

전형료 환불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지원자격 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면접 고사료에 해당하는 금액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한다.

지원자 유의사항

1. 우리대학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2. 지원자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3. 입학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②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 ③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3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2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한다.
5. 제3항의 사유로 우리 대학 또는 타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리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
6.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자료를 발견한 경우 지원자가 지원한 타 대학에 이 사실이 공유될 수 있다.
7. 전형료를 결제한 후에는 입학원서 제출을 취소하거나 모집단위 및 전형유형을 수정할 수 없다.
8.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교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 앞 번호는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남자는 뒷 번호 7자리를 “3000000” 로 하며, 여자는 “4000000” 로 한다.
9. 전형기간 중 입학원서에 기재한 전화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장기간 출타할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우리 대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전화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다.
10. 이 모집요강이 변경되거나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개별 통지하지 않고, 우리 대학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니 지원자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1. 지원자는 면접고사 당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12. 입학전형 성적 등 전형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13.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대학입학 전형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 금지
 - ※ 수시모집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함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모집 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 기간군의 제한 없음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카이스트,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광주과기원, 대구과기원, 한국종합예술대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은 무효로 함

대학입학 전형 이중등록 금지

-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음(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에 대한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에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카이스트,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광주과기원, 대구과기원, 한국종합예술대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이중등록 금지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은 무효로 함

1 전형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원서접수		2024. 7. 8.(월) 09:00 ~ 7. 12.(금) 18:00	
전형서류제출		2024. 7. 8.(월) 09:00 ~ 7. 26.(금) 18:00	
건강진단서제출 (해사대학 지원자에 한함)		2024. 7. 8.(월) 09:00 ~ 7. 26.(금) 18:00	
면접대상자발표		2024. 8. 2.(금)	
면접전형		2024. 8. 8.(목)	
합격자발표	최초합격자	2024. 8. 22.(목)	
	충원합격자	충원합격자 발표할 때 공고	
등록금 납부	등록 확인	최초합격자	2024. 8. 23.(금) ~ 8. 26.(월)
		충원합격자	충원합격자 발표할 때 공고
	등록금 납부		2025. 2. 10.(월) ~ 2. 12.(수)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해사대학	항 해 학 부	13	제한없음	제한없음
	해 상 운 송 학 부			
	항 해 정 보 시 스템 학 부			
	기 관 시 스템 공 학 부			
	해 양 경 찰 학 부			
	해 양 메 카 트 로 닌 스 학 부			
해양공과대학	컴 퓨 터 공 학 과	13	제한없음	제한없음
	조 선 해 양 공 학 과			
	환 경 · 생 명 공 학 과			
	해 양 건 설 공 학 과			

※모집단위별 재외국민전형의 모집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으며, 최종 모집인원은 원서접수 후 모집단위 입학정원을 고려하여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3

유형별 지원자격

가 재외국민 및 전 교육과정 이수자

1) 기본학력 요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 이상 이수한 자.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을 의미함

2) 유형별 지원 자격

유형구분	지원 자격	학 생		보호자			배우자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외국 영주 교포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영주권을 취득 후 2년 이상 영주한 교포의 자녀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외국 근무 공무원의 자녀	외국에서 근무(상근한 경우에 한함)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외국 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정부초청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현지 법인 근무자의 자녀	외국의 현지법인에서 근무(상근한 경우에 한함)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외국에서 자영업을 중이거나 자영업을 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외국 유학생의 자녀	외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유학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보호자의 근무기간은 보호자의 유학기간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해외 파견 교직원	외국의 학교에서 근무(상근한 경우에 한함)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의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2년	12년	/	/	/	/	/

※ 학생 체류기간: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

※ 보호자 및 배우자 체류기간: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

□ 지원자격 심사기준 및 해설

구 분	해 설
<p>■ 자격 및 학력인정 기간 기준시점</p>	<p>① 자격 및 학력 인정기간 기준시점: 2025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함 ② 공통학력요건 기준시점: 2025년 2월 28일까지 졸업한 자 ※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한다.</p>
<p>■ 학력 및 재학기간 인정 기준</p>	<p>①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학교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 등으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한 경우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되어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한 경우 - 12학년제 미만의 1개 국가에서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②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외국의 1개 국가에서 이수한 자. 다만 총 이수한 초·중등과정 이 11년 이상이 되어야함. ③ 13학년제 이상의 국가에서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자 ④ 12학년제 미만인 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2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정규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외국소재 학교에서 재학 중 귀국하여 국내의 고등학교에 신입학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 중학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 학년(Academic Year)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 으로 인정(해당국의 학제 등 고려.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를 1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을 중복으로 수료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p>
<p>■ 전 교육과정 인정 기준</p>	<p>○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음. 단, 2개 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 단, 해당국 및 외국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p>
<p>■ 외국학교 소재지 인정 기준</p>	<p>①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규학교에 대해서만 학력을 인정하며,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외국인 학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 사이버 교육과정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p>

구 분	해 설
	<p>② 보호자의 해외 근무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한다. 다만, 제3국 소재 학교의 재학은 보호자 근무국의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p> <p>③ 해외학교 재학 중에 보호자의 타 국가 인사발령(대한민국 제외)으로 인한 제3국 수학은 인사발령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학기만 인정한다.</p>
<p>■ 거주기간, 체류기간, 근무시간 등의 기준</p>	<p>지원자의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외국학교 재학 인정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p> <p>① 해외근무기간 : 재직증명서상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 발령일까지의 기간(1,095일 이상)</p> <p>② 해외거주기간 및 체류기간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확인서, 재학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함</p> <p>※ 방학기간 동안 학생 및 부모의 국내 체류는 해외 거주 및 체류 기간으로 간주한다.</p>
<p>■ 재외국민 자격인정 범위</p>	<p>① 공무원</p> <p>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p> <p>② 외국 근무 상사 직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법인이 해외에 설치한 지사(지점, 사무소)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법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현지법인의 임직원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p>③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다만,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다만,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p>④ 현지법인 근무자</p> <p>외국 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외의 근무자로 외국 현지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p> <p>⑤ 현지 자영업자</p> <p>외국에서 자영업 허가를 얻어 영업 중이거나 영업하고 귀국한 자</p> <p>⑥ 외국 유학생</p> <p>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2년 이상 유학(거주) 중이거나 유학(거주)하고 귀국한 자</p>

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국내 검정고시 인정)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가 재외국민 및 전 교육과정 이수자

1) 제출서류 목록(서류제출 시 낮은 번호가 위로 가도록 정리할 것)

- | | |
|--------------------------|--------------------|
| A. 외국 영주교포의 자녀 | F. 현지 법인 근무자의 자녀 |
| B. 외국 근무 공무원의 자녀 | G.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
| C. 외국 근무상사 직원의 자녀 | H. 외국 유학생의 자녀 |
| D.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I. 해외 파견교직원 |
| E. 정부초청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J.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번호	구 분	A	B	C	D	E	F	G	H	I	J	비 고
1	입학원서	○	○	○	○	○	○	○	○	○	○	인터넷접수 후 출력
2	수학기간 기록표 [서식 2]	○	○	○	○	○	○	○	○	○	○	
3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	
4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	○	○	○	○	○	○	○	○	
5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국내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	○	○	○	○	○	○	○	○	○	
6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부, 모)	○	○	○	○	○	○	○	○	○		
7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부, 모)	○	○	○	○	○	○	○	○	○	○	전 교육과정 이수자 는 학생만 제출
8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서식 5] (학생, 부, 모)	○	○	○	○	○	○	○	○	○	○	
9	여권 사본(학생, 부, 모)	○	○	○	○	○	○	○	○	○		
10	재외국민등록등본(학생, 부, 모)	○	○	○	○	○	○	○	○	○		
11	신분증 사본										○	
12	영주권 사본(학생, 부, 모)	○										영주권 취득일 명기
13	보호자 재직증명서	○	○	○	○	○	○		○	○		외국 근무지와 근무기간 명기
14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15	해외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이력 (지원자의 고교 재학 중)						○					
16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				
17	학·석·박사 재학 또는 졸업 증명서								○			
18	해외 중·고교 학사일정표 (서류제출 유의사항 ③ 참조)	○	○	○	○	○	○	○	○	○		해당자에 한함
19	제3국 수학인정서 [서식 3] (서류제출 유의사항 ⑥ 참조)		○	○	○	○	○	○	○	○		해당자에 한함

번호	구 분	A	B	C	D	E	F	G	H	I	J	비 고
20	건강진단서 [서식 4]	○	○	○	○	○	○	○	○	○	○	해사대학 지원자에 한함

2) 서류제출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 유효기간

제출 서류의 발급일은 서류제출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한다. 단, 해외발급서류는 해외 재학, 근무, 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② 해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해외 체류기간(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 학기 개시일과 학기 종료일 명기된 「해외 중·고교 학사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외에서 발급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보호자 재직증명서」, 「외국정부가 발급한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호자 세금납입증명서」, 「학·석·박사 재학 증명서」는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단,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는 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최종합격자 중 해외고교 졸업예정자는 입학 후 15일 안에 최근에 발급받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입학학생처에 제출해야 한다.

⑥ 보호자 근무국의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제3국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제3국 수학 사유서[서식3]」를 영사확인 받아 제출해야 한다.

⑦ 필요에 따라 본교에서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본과 사본 모두를 지참하여 입학학생처에 방문 후 원본 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본 제출자는 입학 후 15일 안에 원본을 입학학생처로 제출해야 한다.

아포스티유란?

공문서나 공증문서가 외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해당 국가기관에서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해 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외국에서 발행한 각종 공문서 및 공증 문서(외국에서 재학 및 졸업한 학교의 각종 증명서 포함)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문의: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2002-0251~2, 법무부 02-720-8027

- 외교부(www.0404.go.kr) - 영사서비스 - 아포스티유 확인제도 페이지

※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현황(2024. 1. 11. 기준)

대륙	가입국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나 북한이탈주민

- 1)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
- 2)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1부.(국내 고교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전형 요소

전형요소	배점	전형총점
면접고사	100%	100점 만점

6 면접 고사

가. 대상: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 전체

나. 방법: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등 참고서류를 기초로 진로 계획, 전공기초 소양 및 전공 적합도, 학문적 열정, 적성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면접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면접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적용
라. 면접점수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모집인원 내에 포함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

7 선원건강검진

가. 대상: 해사대학 지원자

나. 제출기한: 2024. 7. 26.(금) 18:00 [건강진단서(국외/원양용, 특수건강검진 사항 포함한 원본)]

다. 건강검진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국내 의료기관에 한함)

(※우리대학 입학정보 홈페이지의 입학공지 참조)

라. 합격기준: 다음의 『건강검진 판정기준표』 【별표 1】에 따른다.

마. 건강검진 시 지참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검진 수수료, 건강진단서【서식 4】 및 건강검진
판정기준표【별표 1】

바. 건강검진 결과는 합격·불합격 판정 자료로만 활용함

사. 건강진단서가 제출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함

아. 검사 의사명 및 서명 란에는 의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함

자. 발급 의료기관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함

차. 건강진단서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및 발급분에 한함

카. 진단서 제출 시 상단에 우리대학 수험번호를 직접 기재하여야 함

8 선발 방법

- 가. 면접고사 영역별 취득성적을 합산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 성적순으로 모집인원 만큼 최초 합격자를 선발하고, 남은 인원은 예비합격자로 한다.
- 나. 건강검진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해사대학 지원자에 한함)
- 다. 합격선의 동점자 선발
- 1) 아래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 1순위: 면접시험의 제2영역
 - 2순위: 학부적성 및 전공수행 기초능력
 - 3순위: 해외학교 재학기간이 긴 자
 - 2) 1)의 마지막 단계 후의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전 모집단위의 합격자가 우리 대학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할 경우 선발하지 않는다.
- 라. 최초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인원만큼 예비합격 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 합격자를 선발한다.

9 등록금 납부

가. 온라인 등록확인서(문서 등록)

※ 등록예치금은 납부하지 않음

1) 등록 기간

- 최초합격자: 2024. 8. 23.(금) ~ 8. 26.(월)
- 충원합격자: 충원합격자 발표 시 공지

2) 등록 방법

-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로그인 → 합격 확인 → 온라인 등록에서 등록버튼 클릭
→ 등록확인서 출력·보관

※우리 대학 홈페이지의 온라인 등록 안내 사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

나. 등록금 납부

- 1) 납부 기간: 2025. 2. 10.(월) ~ 2. 12.(수)
- 2) 납부 방법: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 입금
- 3) 납부 금액: 등록금 전액

※ 참고사항

【2024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내역】

대학	등록금(수업료)
해사대학	1,624,000
해양공과대학	1,960,000

다. 등록 유의사항

- 1) 합격자는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등록하지 않으면 우리 대학에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 2) 우리 대학과 입학 학기가 같은 다른 대학에 이중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수시모집 합격자(충원 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대학 및 타 대학에서 실시하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 4) 합격자를 발표할 때 우리 대학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등록 및 입학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10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

- 가. 우리 대학에 합격자한 자가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한 경우 합격 통보를 받은 즉시 등록을 원하지 않은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우리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가 우리 대학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서를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등록포기서 등 제출 문의 ☎ (061) 240 - 7022, 7025
- 라. 등록금 환불을 우리 대학 입학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불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 마. 등록금 환불은 신청 당일에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202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원서

지원 사항	지원 학부(과)			수험번호	※	
	유형 구분		사 진 (3.5cm × 4.5cm)			
	지원자 구분					
지 원 자	성 명	한 글				
		영 문				
	주민등록번호	-	국적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출신고교	년 월 일	고등학교 (졸업예정 <input type="checkbox"/> , 졸업 <input type="checkbox"/>)				
연 락 처	주 소 (-)					
	휴대전화		자택전화			
	추가연락처		지원자 e-mail			
전형료 환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본인은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⑨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장 귀하</p>						

※ 유형 구분

- ① 외국 영주 교포의 자녀 ② 외국 근무 공무원의 자녀 ③ 외국근무 상사 직원의 자녀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⑤ 정부초청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⑥ 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⑦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⑧ 외국 유학생의 자녀 ⑨ 해외파견 교직원 ⑩ 전 교육과정 이수자 ⑪북한이탈주민

제3국 수학 사유서

◆ 지원자 기재사항

성 명	(서명)	수험번호	*
지원모집단위	대학	학부(과)	
학생 재학국	보호자 근무국		
제3국 수학기간	년 월 일(학년 학기) ~	년 월 일(학년 학기)	

◆ 제3국 수학 사유

■ 증빙서류 목록(신문기사 등) :

【별표 1】

【건강검진 판정기준표】

검사항목	판정기준			
1. 시력	항해학부 해상운송학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부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시력을 통합한 교정시력이 0.4 이상일 것		
2. 체격	심한 신체의 박약, 심한 흉곽발육의 불량 그 밖에 선박내의 노동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3.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 폐, 늑막, 심장 또는 신장의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을 것			
4. 청력	항해학부 해상운송학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두 귀 모두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속삭임을 청취할 수 있을 것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부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한 귀 이상이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속삭임을 청취할 수 있을 것		
5. 색각	적색, 청색, 황색, 녹색의 구분이 가능할 것(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 사용 가능, 건강진단서 색각란에 색약이 표기되면 불합격 처리됨)			
6. 운동기능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손가락·손·팔뚝 또는 신체 각 부위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손이 없을 것. 다만, 장애의 정도가 경증이거나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에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			
7. 병후쇠약	병후의 쇠약에 따라 일정기간내의 승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8. 혈당	공복 시 125 mg/dl 이하일 것			
9. 간장	SGOT: 50 IU/L 이하일 것, SGPT: 45 IU/L이하일 것			
10. C.B.C(빈혈)	[정상기준치]			
	R.B.C	4.2-6.3	M.C.H	26.0~33.0
	H.G.B	남자 12.0 이상 여자 10.0 이상	M.C.H.C	32.0~37.0
	H.C.T	36.0-52.0	W.B.C	4.0~10.0
	M.C.V	79.0-96.0		
11. R.P.R(V.D.R) (매독반응)				
12. 소변검사				
13. 기타	사시, 안면흉터, 토순(免脣), 언어장애 등이 심하지 않은 자			

- ▶ 검진 의사는 정상기준치 및 질병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 위 표의 검사항목 중 시력과 관련하여 두 눈 중 최소한 한쪽 눈의 경우에는 안구질환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 ▶ 색각 판정에서 색약 등의 이상이 표기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를 사용하여 정상 표기가 되어야 한다.